일본의 도쿄도 세타카야구 조례 - 제9류 구민생활/제7장 사회복지

(世田谷区条例 第9類 区民生活 第7章 社会福祉)

정보신청기관: 부산 진구청

- 1) 세타카야구 지역 보건복지 추진 조례(1996 년 3월 13일 조례 제7호)
- 구는 구민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 사람 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고 건강하고 문화적 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 하기 위해 건강복지의 향상과 증진을 도모하 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사회는 지역주민 의 행복추구, 사회활동의 안전과 발전을 목 표로 수행하는 건강, 사회복지, 사회보장, 주 택 및 주거환경의 정비, 고용, 교육 등 광범 위한 사회활동에 의해 실현된다. 따라서 구 와 구민 및 사업자 등은 사회적 보장과 자조 와의 조화와 통합을 도모하고 사회적 연대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오늘날뿐 아 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채무인 것을 인식함과 동시에 지혜와 힘을 합하여 세타카야구의 자긍심을 고양하 고 지역보건복지사회를 실현을 결의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한다.
- 이 조례는 지역보건복지에 대하여 기본적 사

항을 정하고, 다른 조례 등과 함께 지역보건 복지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 계획적 또는 공 정하게 실시하고, 지역보건복지의 추진을 도 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

区は、区民が現在及び将来にわたって、人とし ての尊厳が保たれ、健康で文化的な生活を営むこ とができる地域社会を築いていくため、保健福祉 の向上と増准を図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 のような社会は、地域住民の幸福追求、社会生活 の安定と発展を目指して行われる保健、社会福 祉、社会保障、住宅及び住環境の整備、雇用、教 育などの広範な社会活動によって実現される。そ のためには、区と区民及び事業者等は、社会的 保障と自助との調和と統合を図りつつ、社会的連 帯を更に推進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こ とは、今日のためのみならず、明日のためにも、 私たちが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責務であること を認識し、共に知恵と力を合わせて、世田谷区に 誇り高い地域保健福祉社会を実現することを決意 し、この条例を制定する。

(시행규칙)

세타가야구 지역보건복지추진조례시행규칙 (1996년 3월29일 규칙 제29호)

- 이 규칙은 세타가야구 지역보건복지추진조 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 이 규칙은 세타가야구 지역 보건복지 심의회의 의 위원, 심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 심의회의 회의, 세타가야구 보건복지 서비스 고충 심사회의 회장 및 부회장에 관한 규정, 고충의 신청방법 및 신청인의 범위, 세타가야구 보건복지 서비스 향상 위원회의 회장 및 부회장에 관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한다.

2) 사회복지법인 조성의 절차에 관한 조례 (1983년 3월 29일 조례 제18호)

•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1951년 법률 제45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 법인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법인세타가 야구사회복지사업단 이외의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그 조성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워문)

第1条 この条例は、社会福祉法(昭和26年 法律 第45号)第58条第1項の規定に基づき、社会福祉 法人社会福祉協議会及び社会福祉法人世田谷区社 会福祉事業団以外の社会福祉法人(以下「社会福祉 法人」という。)に対する助成の手続について定める ものとする。

•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인 조성의 대상 및 신 청, 결정, 조건, 현황보고, 실적보고 등에 관 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시행규칙)

사회복지법인 조성의 절차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1983년 4월 1일 규칙 제21호)

- 이 규칙은 사회복지법인 조성의 절차에 관한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 3)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협의회 조성의 절차에 관한 조례(1966년 12월 10일 조례 제53호)
- 사회복지법(1951년 법률 제45호) 제58조 제1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사회복 지협의회의 조성의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第1条 社会福祉法(昭和26年 法律 第45号)第58 条第1項の規定に基づき、社会福祉法人社会福祉協議会(以下「社会福祉協議会」という。)に対する助成の手続については、別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条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조성의 대상, 신청, 결정, 조건, 실적보고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시행규칙)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협의회의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978년 8월 1일 규칙 제54호)

• 이 규칙은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협의회 조성의 절차에 관한 조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 4) 사회복지법인 세타가야구 사회복지사업단 조성의 절차에 관한 조례(1994년 9월 21일 조례 제35호)
-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1951년 법률 제45호)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 법인 세타가야구 사회복지사업단 조성에 대 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원문)

第1条 この条例は、社会福祉法(昭和26年 法律 第45号)第58条第1項の規定に基づき、社会福祉 法人世田谷区社会福祉事業団(以下「社会福祉事業 団」という。)に対する助成の手続について定めるも のとする。

•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인 세타가야구 사회복 지 사업단 조성의 대상, 신청, 결정, 조건, 현 황보고, 실적보고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시행규칙)

사회복지법인 세타가야구 사회복지사업단 조성의 절차에 관한 조례시행규칙(1994년 9월 28일 조례 제108호)

- 이 규칙은 사회복지법인 세타가야구 사회복 지사업단 조성의 절차에 관한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 5) 세타가야구 민생위원회추천회규칙(1956년 10월 10일 규칙 제12호)
- 민생위원법령(1948년 8월 법령 제226호) 제 7조의 규정을 의거하여 이 규칙을 정한다. 민 생위원추천회의 위원은 14인으로 한다.

(원문)

民生委員法施行令(昭和23年8月 政令 第226号) 第7条の規定に基きこの規則を定める。民生委員 推せん会の委員は、14人とする。

- 6) 생활보호법집행세칙(1965년 3월 30일 규칙 제20호)
- 생활보호법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 37조까지, 제48조 제4항, 제62조 제3항 및 제 4항, 제63조,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80조 에 규정한 구장의 보호의 결정 및 실시에 관 한 권한은 세타가야의 복지에 관한 사무소 설비 조례에서 정한 구에 설치한 복지를 담 당하는 사무소에 위임한다.

(원문)

第1条生活保護法(昭和25年法律第144号。以下「法」という。)第19条第4項の規定に基づき、法第24条から第28条まで、第30条から第37条まで、第48条第4項、第62条第3項及び第4項、第63条、第76条第1項、第77条、第78条、第80条並びに第81条に規定する区長の保護の決定及び実施に関する権限(ただし、法第63条、第77条第1項及び第78条に関する権限については、返還額又は徴収額を定める権限に限る。)は、世田谷区の福祉に関する事務所設置条例(昭和40年3月世田谷区条例第5号)に定める区の区域に設置した福祉に関する事務所の長(以下「福祉事務所長」という。)に委任する。一部改正〔平成2年規則68号・3年43号・4年22号・12年72号〕

• 이 세칙은 복지사무소장이 피보호자에 대하여 작성해야 하는 서류, 보호를 시행할 때의 통지, 보호신청서에 관한 내용과 조사의뢰 서, 보호시설 등의 입소의뢰서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7) 중국잔류방인등에 대한 지원급부사무취급 규칙(2008년 3월 31일 규칙 제54호)

• 이 규칙은 중국잔류방인 등의 원활한 귀국의 촉진 및 영주귀국 후의 자립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지원급부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대해서는 법, 중국잔류방인 등의 원활한 귀국의 추진 및 영주귀국 후의 자립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국잔류방인 등의 원활한 귀국의 추진 및 영주귀국 후의 자립의 지원에 관한 법률집행규칙 등에 정한 것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원문)

第1条 中国残留邦人等の円滑な帰国の促進及び 永住帰国後の自立の支援に関する法律(平成6年 法 律第 30号。以下「法」という。) に基づく支援給付 (以下「支援給付」という。) に関する事務の取扱い については、法、中国残留邦人等の円滑な帰国の 促進及び永住帰国後の自立の支援に関する法律施 行令(平成8年 政令 第18号)、中国残留邦人等の円 滑な帰国の促進及び永住帰国後の自立の支援に関 する法律施行規則(平成6年 厚生省令 第63号) 等 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規則の定めるところに よる。

• 이 규칙은 구장(区長)이 피지원자에 대하여 작성해야 할 서류, 생활보호법에 의거하여 지원급부를 시행할 경우의 통지, 지원급부 의 신청서, 결정통지서, 검진명령서, 조사의 뢰서, 피지원자를 보호시설 등에 입소할 경 우 입소의뢰서, 입소피지원자현황변경신고 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8) 세타가야 보육의 실시 등에 관한 조례 (1997년 12월 4일 조례 제59호)

•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의 실시기준 외에 보육소에서 실시하는 보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원문)

第1条 この条例は、児童福祉法(昭和22年 法律 第164号。以下「法」という。)第24条第1項の規定 による保育の実施基準その他の保育所における保育 の実施等に関し必要な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 이 조례는 보육의 실시기준, 보육료, 연장보육료, 보육료 등의 금액 결정, 보육료 등의 감면, 납부기간, 체납처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세타가야구 보육의 실시 등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1998년 2월 6일 규칙 제7호)

• 이 규칙은 세타가야구 보육의 실시 등에 관한 조례의 집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워문)

第1条 この規則は、世田谷区保育の実施等に関する条例(平成9年12月世田谷区条例第59号。以下「条例」という。)の施行について必要な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 9) 세타가야구 아동복지법의 집행에 관한 규칙 (1987년 3월 31일 규칙 제33호)
-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의 집행에 관한 아동 복지법집행령,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세타가 야구 보육의 실시 등에 관한 조례 및 세타가 야구 보육의 실시 등에 관한 조례집행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원문)

第1条 この規則は、児童福祉法(昭和22年 法律 第164号。以下「法」という。)の施行について、児 童福祉法施行令(昭和23年 政令 第74号)、児童福祉 法施行規則(昭和23年 厚生省令 第11号)、世田谷区 保育の実施等に関する条例(平成9年12月 世田谷区 条例 第59号)及び世田谷区保育の実施等に関する 条例施行規則(平成10年2月 世田谷区規則 第7号) に定めるもののほか、必要な事項を定めるものと する。

- 이 규칙은 장애복지서비스 조치의 통지 및 변경의 통지 · 해제의 통지, 장애복지서비스 의 조치에 관한 징수금액, 조산시설 등의 입 소신청 및 입소통지, 보호실시의 해제 등의 통지, 조산 및 모자보호의 실시에 관한 징수 금액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10) 세타가야구 노인복지법의 시행에 관한 규칙(1987년 3월 31일 규칙 제26호)
-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의 집행에 관하여 노인 복지법시행령 및 노인복지법집행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워문)

第1条 この規則は、老人福祉法(昭和38年 法律 第133号。以下「法」という。)の施行について、老 人福祉法施行令(昭和38年 政令 第247号。以下「政 令」という。)及び老人福祉法施行規則(昭和38年 厚 生省令 第28号。以下「省令」という。) に定めるも ののほか、必要な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 이 규칙은 노인홈 입소조치의 기준, 양호위 탁 조치의 기준, 입소판정위원회의 설치, 조 치의 개시 · 변경 및 폐지, 65세 미만인 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11) 세타가야구 신체장애자복지법의 집행에 관한 규칙(1987년 3월 31일 규칙 제28호)
- 이 규칙은 신체장애복지법의 집행에 관하여 신체장애자복지법시행령 및 신체장애자복 지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한 것이다.

(원문)

第1条この規則は、身体障害者福祉法(昭和24年 法律 第283号。以下「法」という。)の施行につい て、身体障害者福祉法施行令(昭和25年 政令 第78 号。以下「政令」という。)及び身体障害者福祉法施 行規則(昭和25年 厚生省令 第15号) に定めるもの のほか、必要な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 이 규칙은 신체장애자갱생상담소의 판정을 구하는 경우 판정의뢰서에 관한 내용, 장애 서비스, 장애자지원시설 등의 입소 등의 조 치변경통지 및 조치해제통지, 장애복지서비스 조치에 관한 비용 등의 변경,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12) 세타가야구 지적장애자복지법의 시행에 관한 규칙(1987년 3월 31일 규칙 제29호)
- 이 규칙은 지적장애보호법의 집행에 관하여 지적장애자복지법시행령 및 지적장애자복 지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한 것이다.

(워문)

第1条 この規則は、知的障害者福祉法(昭和35年 法律 第37号。以下「法」という。)の施行について、知的障害者福祉法施行令(昭和35年 政令 第103号)及び知的障害者福祉法施行規則(昭和35年厚生省令第16号。以下「省令」という。)に定めるもののほか、必要な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 이 규칙은 지적장애자갱생상담소의 판정을 구하는 경우의 판정의뢰서에 관한 사항, 지 적장애자 또는 그 보호자의 직친조치신청서 (職親措置申請書)에 관한 사항, 장애복지서 비스 등 조치의 통지, 장애자지원시설 입소 등 조치의 통지, 비용의 징수 및 변경 등을 규 정하고 있다.
- 13) 세타가야구 신체장애복지법의 시행에 관한 규칙, 세타가야구 지적장애자복지법의 시행에 관한 규칙 및 세타가야구 아동복지법의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조치를 행하는 경우 이용자부담액의 정산에 관한 기준(2010년 5월 19일 고시 제387호)
- 2009년 7월 31일 세타가야구 고시 제509호 의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세타가야 구 신체장애자복지법의 집행에 관한 규칙 제 15조 제1항, 세타가야구 지적장애자복지법

의집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및 세타가 야구아동복지법의 집행에 관한 규칙 제8조 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득이한 사 유에 의해 조치를 행하는 경우 이용자부담의 금액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별지와 같이 규 정한다.

(원문)

平成21年7月31日 世田谷区告示 第509号の全部 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世田谷区身体障害者福祉法の施行に関する規則(昭和62年3月 世田谷区規則 第28号)第15条第1項、世田谷区知的障害者福祉法の施行に関する規則(昭和62年3月 世田谷区規則 第29号)第11条第1項及び世田谷区児童福祉法の施行に関する規則(昭和62年3月世田谷区規則第33号)第8条の2第1項の規定に基づき、やむを得ない事由による措置を行った場合の利用者負担の額の算定に関する基準を別紙のとおり定める。

- 이 기준에서는 시설입소지원, 숙박형자립훈 런 및 지적장애자통근기숙사를 이용하는 생 활개호(介護), 자립훈련, 취로이행지원(就労 移行支援) 및 치로계속지원 등의 장애복지 서비스에 관한 피조치자의 이용부담액, 피조 치자의 부양의무자의 이용자부담액 등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다.
- 14) 세타가야구장애자자립지원법의 집행에 관한 규칙(2006년 3월 31일 규칙 제69호)
- 이 규칙은 장애자자립지원법의 집행에 대하여 장애자자립지원법시행령 및 장애자자립지원법시행령 및 장애자자립지원법집행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사

항을 규정한 것이다.

(원문)

第1条 この規則は、障害者自立支援法(平成17年 法律 第123号。以下「法」という。)の施行につい て、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令(平成18年 政令 第10 号。以下「政令」という。)及び障害者自立支援法施 行規則(平成18年 厚生労働省令 第19号。以下「省 令」という。)に定めるもののほか、必要な事項を定 めるものとする。

- 이 규칙은 간호급부비용, 서비스이용계획작성비, 고액장애복지서비스비, 특정장애자특별급부비 및 특례특정장애자특별급부비, 자립지원의료비, 요양간호의료비, 보장구비 (補裝具: 장애인활동을 도와주는 기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15) 세타가야구 장애인정심사회의 위원의 정원등을 정한 조례(2006년 3월 14일 조례제29호)
- 장애자자립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한 시읍면의 심사회는 세타가야구 장애자인정심사회로서 심사회의 위원의 정원은 70인 이내로 한다.

(워문)

第1条 障害者自立支援法(平成17年 法律 第123 号)第15条の規定により設置する市町村審査会は、 世田谷区障害認定審査会(以下「審査会」という。) とし、審査会の委員の定数は、70人以内とする。

16) 세타가야구 장애자인정심사회규칙(2006년3월 14일 규칙 제8호)

• 이 규칙은 세타가야 장애인정심사회의 위원 의 정원 등을 정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세타가야구 장애자심사회에 관해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워모)

第1条 この規則は、世田谷区障害認定審査会の委員の定数等を定める条例(平成18年3月 世田谷区条例 第29号)第2条の規定に基づき、世田谷区障害認定審査会(以下「審査会」という。)に関し必要な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 이 규칙은 장애자인정심사위원회 부회(部会) 의 설치, 부회 위원의 정원수, 부회 소속의 변 경, 부회장의 직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 고 있다.
- 17) 세타가야구 기본해당장애복지서비스사업 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2002년 12월 2일 규칙 제95호)
- 이 규칙은 장애자자립지원법에 의거하여 특례간호급부비 및 고액장애복지서비스비의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 제30조 제1항제2호에 규정한 기본해당장애복지서비스의사업을 행하는 자의 등록 등에 대해 필요한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워문)

第1条この規則は、障害者自立支援法(平成17年 法律第123号。以下「法」という。)に基づく特例介 護給付費及び高額障害福祉サービス費の支給を円 滑に行うため、法第30条第1項第2号に規定する 基準該当障害福祉サービス(以下「基準該当障害福 祉サービス」という。)の事業を行う者の登録等につ いて必要な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 이 규칙은 기준해당장애자서비스 사무자의 등록, 기준해당장애복지서비스 사업자 등록 의 신청, 등록의 통지, 변경의 신고, 기준해당 장애자복지서비스에 관한 특례간호급부비 의 지급, 특례간호급부비 및 고액장애복지서 비스비의 대리수령, 보고, 등록의 취소, 사업 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록의 갱신, 위임 등에 관한 것들을 내용으로 한다.
- 18) 세타가야구 지정주택개호사업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2003년 4월 1일 훈령갑 제 12호)
- 이 규정은 구의 장애자자립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정장애복지서비스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성령(省令) 제12조 제1항에 규정한 지정주택개호의 사업을 행하는 사무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성령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워문)

第1条 この規程は、区における障害者自立支援 法に基づく指定障害福祉サービスの事業の人員、 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等に関する省令(平成18 年 厚生労働省令 第56号。以下「省令」という。)第 12条第1項に規定する指定居宅介護の事業を行う 事業所の運営等について、省令に定めるもののほか、必要な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 이 규정은 지정주택개호에 관한 용어의 정의, 센터사무소의 설치와 그 직원, 서비스제

공책임자의 선임, 관리자, 감독자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 19) 세타가야구 심신장애자복지수당조례(1974 년 10월 1일 조례 제45호)
- 이 조례는 심신장애 및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타가야 심신장애자복지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의해 이들의 복지의 중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워문)

第1条 この条例は、心身に障害又は疾病のある者(以下「障害者」という。)に対し、世田谷区心身障害者福祉手当(以下「手当」という。)を支給することにより、これらの者の福祉の増進を図ることを目的とする。

• 이 조례는 심신장애자복지수당의 지급요건, 수당의 금액, 수급자격의 인정, 지급기간, 지 급기간의 특례, 수급자격의 소멸, 수급의 반 환, 상황조사, 신청 등의 대행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시행규칙)

세타가야구 심신장애자복지수당조례집행규칙(1984년 3월 31일 규칙 제15호)

- 이 규칙은 세타가야구 심신장애자복지수당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 이 규칙은 심신장애자복지수당의 지급요건 의 특례에 관한 사유, 시설, 소득의 금액과 범 위 및 산정방법, 인정의 신청, 인정 및 각하, 지불기간의 특례, 지불의 조정, 수당의 반환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한다.

- 20) 세타가야구 아동육성수당조례(1971년 9월 20일 조례 제34호)
- 이 조례는 아동에 대한 아동육성수당을 지급 하는 것에 의하여 아동 복지의 증진을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원문)

第1条 この条例は、児童について児童育成手当(以下「手当」という。)を支給することにより、児童の福祉の増進を図ることを目的とする。

• 이 조례는 아동육성 수당의 취지, 용어의 정의, 지급요건, 수당의 종류 및 금액, 지급기간및 지불기월(期月), 지불의 조정, 수당의 반환, 신고의무,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시행규칙)

세타가야구 아동육성수당조례시행규칙(1982 년 6월 30일 규칙 제42호)

- 21) 세타가야구 후기고령자 의료에 관한 조례 (2008년 3월 11일 조례 제19호)
- 세타가야구가 시행하는 후기고령의료사무에 대해서 고령자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 고령자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령자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집행규칙, 그 외의법령 및 동경부후기고령자의료광역연합후기고령자의료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워문)

第1条 世田谷区(以下「区」という。)が行う後期高齢者医療の事務については、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昭和57年 法律 第80号。以下「法」という。)、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平成19年 政令 第318号。以下「令」という。)、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平成19年 厚生労働省令 第129号。以下「施行規則」という。)その他の法令及び東京都後期高齢者医療広域連合後期高齢者医療に関する条例(平成19年東京都後期高齢者医療広域連合条例第44号。以下「広域連合条例」という。)に定めがあるもののほか、この条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 이 조례는 후기고령자의료에 관하여 구에서 행하는 사무, 보험료를 징수하는 전체 피보 험자, 보통징수에 관한 보험료의 납기(納期), 연체금, 공시송달, 위임, 벌칙, 시행기일, 준 비행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시행규칙)

세타가야구 후기고령자 의료에 관한 조례 시 행규칙(2008년 3월 31일 규칙 제43호)

- 이 규칙은 세타가야구 후기고령자 의료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 이 시행규칙은 후기고령자 의료에 관한 납입 통지, 계좌이체의 결과통지, 직원의 질문 및 검사와 같은 증명서의 휴대, 과오납(過誤納) 에 관한 징수금의 취급, 과료처분의 통지, 위 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22) 세타가야구 여행객 환자 및 사망한 여행객 취급법의 집행에 관한 법칙(1987년 3월 31 일 법칙 제25호)
- 이 규칙은 여행객 환자 및 사망한 여행객 취급 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워무)

第1条 この規則は、行旅病人及行旅死亡人取扱法(明治32年 法律 第93号。以下「法」という。)の 施行について、必要な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 이 규칙은 여행객 환자 및 사망한 여행객의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인수통지, 영사관에 통지, 유치구호, 송환, 시설 등에 위탁, 비용 변상청구절차, 고시 기간, 통지사항, 유류(遺 留) 물건의 처분 등을 내용으로 한다.
- 23) 세타가야구 한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의 조성에 관한 조례(1989년 9월 27일 조례 제 50호)
- 이 조례는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하여 의료비를 조성하고 한부모 가정의 보건의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부모 가정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워문)

第1条 この条例は、ひとり親家庭等に対し、医療費を助成し、もってひとり親家庭等の保健の向上に寄与するとともに、ひとり親家庭等の福祉の増進を図ることを目的とする。

• 이 조례는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대상자, 의료증의 교부, 의료증의 제시, 조성의 정의 및 방법, 신청의 의무, 양도 또는

담보의 금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취득, 조성 비의 반환, 보고,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시행규칙)

세타가야구 한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의 조성 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989년 12월 28일 규칙 제73호)

- 이 규칙은 세타가야구 한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의 조성에 관한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 이 규칙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용어의 정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 부모의 상태에 관한 기준, 사회보험각법 등을 내용으로 한다.
- 24) 세타가야구 아동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 례(1992년 6월 16일 조례 제52호)
- 이 조례는 유아 및 아동에 관한 의료비의 일부를 조성하고 아동 보건의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아동복지 증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

第1条 この条例は、乳幼児及び児童(以下「子ども」という。)に係る医療費の一部を助成し、もって子どもの保健の向上に寄与するとともに、児童福祉の増進を図ることを目的とする。

• 이 조례는 적용 대상자, 수급자격의 인정, 의료증의 제시, 의료비조성의 범위 및 방법, 신청의무, 양도 및 담보의 금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취득, 조성비의 반환,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행규칙)

세타가야구 아동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992년 7월 31일 규칙 제80호)

- 이 시행규칙은 세타가야구 아동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것이다.
- 이 시행규칙은 아동의 의료증 교부의 신청 에 관한 사항, 의료증 또는 수급자격인정통

지의 유효기간, 의료증의 재교부, 세타가야 구 아동 의료비 조성 방법의 특례, 수급자격 자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 로 하고 있다.

김 잔 디

(해외입법조사원, 오사카대학 대학원)